

# 7. 建設技術管理法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2-119號 1992. 9. 9

## 1. 개정이유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인력관리, 기술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감리제도등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건설기술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인력 수급계획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자로서 하여금 기술자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에 위반한 건설업체등 일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 나. 건설기술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인 건설기술인협회를 법정법인화 함.
- 다. 교육훈련대상에 건설기술자외에 감리업체 건축사 및 고급기술자를 포함하여 의무화하고 감리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체의 경영자에 대한 연수교

육제도를 도입함.

- 라. 건설기술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및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건설기술연구·개발투자권고대상기관을 건설업자외에 정부투자기관 및 기술용역업자까지 확대함.
- 마. 신기술의 평가등 지정절차를 보완하고, 지정후 결함 발생시 취소등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
- 바. 건설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판매자에 대하여 자재품질시험실시 의무규정을 신설함.
- 사.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미 실시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 5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강화함.
- 아.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적정성여부 확인자의 범위를 건설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까지 자체 실시토록 확대하고, 건설공사의 재해방

지를 위한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추가함.

차. 신공법등 국내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기 부적합한 감리업무를 외국의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근거를 마련함.

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기관을 현행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외에 지자체투자기관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까지 확대함.

타. 적정감리대가의 현실화로 건설한 감리대가 이루어 지도록 감리대가기준의 제정근거를 마련함.

파. 감리자에게 공사증지·재시공 명령권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 및 제재규정을 강화하여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

하. 감리자의 부실감리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에게 변상책임을 부담토록하고, 감리협회에게는 이에대한 보증기능을 부여함.

거. 감리전문회사의 자율성제고와 전문감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감리협회의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를 정함.

### 3. 의견 제출

이 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기술진흥담당관, 전화 503-73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